

# 포스텍 기술·경영 혁신과정 운영규정

제정 1995.12. 1

개정 2006. 4.22

개정 2017. 3. 1

개정 2019. 5.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과정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제우위를 위한 효과적인 혁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기술경영 및 경영혁신 등을 통한 조직합리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학과 사회의 연계를 통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2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다.

제2조(명칭) ① 본 과정은 포스텍 기술·경영 혁신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06.4.22)

② 제1항 명칭의 영문표기는 “POSTECH Advance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PAMTIP)”으로 한다. (개정: 2006.4.22)

제3조(사무소) 본 과정의 사무소는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둔다.

## 제 2 장 강좌 및 과정기간

제4조(강좌) ① 본 과정의 개설강좌는 한 강좌당 100분 강의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7.3.1)

② 강좌 과목 및 수업시간은 학기 개강이전에 수강생에게 배포한다. (개정: 2017.3.1)

③ 본 강좌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크게 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과과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3.1)

1. 제1과정 : 창조경영 전략(재무/마케팅, 품질경영/서비스전략, 지식경영/전략경영, 금융공학, 기술경영/경영정보시스템, 디자인경영)
2. 제2과정 : 미래 기술전략 (미래정보기술, 나노기술과 신소재개발, 환경기술과 에너지 산업화, 생명공학기술과 바이오 사업화, 기술 사업화와 벤처기업운영)
3. 제3과정 : 커뮤니케이션/리더십 (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리더십과 전략마인드, 변화관리와 뉴리더십, CEO 이미지 메이킹)
4. 제4과정 : CEO를 위한 문화예술 ( 비즈니스 교양/ CEO 와인특강,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 인문과 경영, 리더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문화유적)

제5조(특별강좌) ① 본 과정에서는 제4조 제1항의 강좌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강좌의 강사자격기준에 있어서는 대학총(학)장,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체 회장 등의 지도층 인사로 한한다.

제6조(단기강좌) 본 과정에서는 수시로 단기간의 단기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과정기간) ① 본 과정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1)(개정: 2019.5.1)

1. 1 학기 과정 : 3월 1일 ~ 8월 31일
2. 2 학기 과정 : 9월 1일 ~ 익년 2월 말일

② 각 개강일은 학사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 3 장 강 사

제8조(강사) ① 본 과정의 강사진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와 기타 외부교수로 구성한다.

② 강사는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본 과정이 부합되도록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1. 강의록 사전 제출
2. 강의

제9조(강사료) ① 강사에게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며, 외부강사에게는 강사료 이외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강사료 및 교통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 4 장 입학 및 전형

제10조(입학자격)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3.1)(개정: 2019.5.1)

1. 관공서 사무관급 이상, 대기업 및 대학 교직원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의 임원급 이상, 군경의 경우 고급 간부급 이상
2. 기타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 노무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1)

제11조(지원절차)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입학전형) 본 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의 경쟁률이 높을시 면접전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제13조(입학정원)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40명 내외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시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1)(개정 2019.5.1)

제14조(등록금) ① 본 과정 수강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CEO의 경우에는 우대 정책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1)(개정 2019.5.1)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③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5 장 수 료

제15조(수료)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과제(Report)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결시율에 따른 과제 Report) 편수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

제16조(출석) 수강자의 개인사정(출장, 질병등)으로 인한 결석은 이유여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7조(과제제출) 수강자는 수료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수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1편의 Repor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개정 2019.5.1)

제18조(수료증) 본 과정 수강자중 제15조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수료증(Diploma) 및 수료패를 수여한다.

제19조(수료식) 수료식은 제 15조를 충족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5.1)

## 제 6 장 학생관리 및 포상

제20조(학칙준수) 본 과정의 수강자는 이 규정과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입학허가취소) 수강자가 제20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휴학 및 자퇴) 질병, 장기출장,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자로서 휴학원을 제출하여 주임교수에게 승인을 받아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있다.

제23조(복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2년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 다만, 휴학당시의 등록금보다 복학 당시의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분 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신분) 수강자는 재학중 학생신분을 향유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학생증 발급 소지
2. 도서관의 도서대출
3. 학교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4. 기타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제25조(학생회) 수강자는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포상) 수강자 및 수료자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포상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1)

1. 성적우수상
2. 삭제
3. 개근상
4. 공로상

## 제 7 장 주무교수 및 운영위원회

제27조(주임교수) 본 과정에서는 본 과정을 통할하는 주임교수를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제28조(주무교수) 주임교수 산하에 주무교수를 제4조 제3항 각 과정에 두며, 주무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외부교수 포함)으로 겸보한다.

제29조(행정인력) 본 과정의 학생유치 및 행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3.1)

제30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하고, 위원은 제29조의 주무교수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3.1)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1)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7.3.1)

1. 입학, 졸업사정
2. 교과과정 선정 및 강사의 위촉
3. 수료 시 포상
4. 기타 본 과정 운영의 중요사항

제3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포항공과대학교 기술혁신 최고경영자과정'의 부서 명칭을 '포스텍 기술·경영 혁신과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규정의 명칭을 '포스텍 기술·경영 혁신과정 운영규정'으로 변경한다.
2. 이 규정의 명칭 및 제2조는 2006년 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